

의안번호	제 2021 - 2호
보 고 연 월 일	2021. 1. 11. (제10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 목 차

I. 제138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II.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중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2
1. 대유형 1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2
2.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19
3.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	22
4. 기타 사항(절도죄와 경합범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례) 검토 결과 .....	24
III.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중 소유형 명칭 변경 .....	26
1.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 심의 결과 .....	26
2.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소유형 명칭 변경안 .....	27
3.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 시 요청사항 검토 결과 .....	30
IV.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중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32
1.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32
2. 대유형 2 '대기환경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49
3. 대유형 3 '물환경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51
4. 대유형 4 '해양환경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55
5. 대유형 5 '가축분뇨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57
6.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	59

---

V.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62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내용 .....	62
2. 권고 형량범위검토 결과 .....	63
3. 양형인자 검토 결과 .....	72
4.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	89
VI. 향후 일정 .....	92

**【별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승원,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li> <li>■ 최성국, 유관모, “주거침입, 환경범죄 양형기준 검토(Ⅲ)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li> <li>■ 최승원,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 검토(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li> <li>■ 백광균, “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li> <li>■ 최성국, 유관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검토(Ⅱ)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li> <li>■ 백광균, “「보험 가입」 정의 수정안”</li> <li>■ 최성국, 유관모, “「보험 가입」 정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li> </ul> |
|--|



# I. 제138차 전체회의

## 1. 일시 · 방식

- 일시 : 2020. 12. 21.(월) 15:00 ~ 21:00
- 장소 :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2. 참석자(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혜경,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범현, 유관모, 이형일, 최성국,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개인 사정으로 범현 전문위원은 18시경부터, 강수진 전문위원은 19시경부터 각각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함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안(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안(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II.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중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1. 대유형 1 ‘일반적 기준’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가. 유형 분류 / 권고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105차, 제106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8월	6월-1년	10월-2년
2	퇴거불응	-6월	4월-10월	8월-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6월	4월-1년	8월-2년

▷ 공동주거침입은 1유형에, 공동퇴거불응은 2유형에 각 포섭

#### 나. 검토 결과

#####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u>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u></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u></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 고발</li> <li>• <u>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u>상습범인 경우</u></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2) 반영함에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가) 특별감경인자

#### 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과거 자신이 출입하던 다른 사람의 주거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쟁의 행위를 위하여 사무실에 진입하는 등 주로 주거를 간수하는 사람의 추정적 승낙이 문제되는 사례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있음. 행위불법이 가볍다는 측면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③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무고, 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주거침입범죄의 경우에도 상당수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 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음. 그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와의 불륜을 의심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경우 등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유치권 분쟁 중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개 짖는 소리가 며칠째 심하게 들리자 주인이 개를 방치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구해야 겠다는 생각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등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④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 양형기준 등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추가 ☞ 2020 양형기준 책자의 30쪽 하단에 있는 서술식 기준 참조

#### ⑤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나) 특별가중인자

##### 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유치권 행사, 업무방해 등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사례가 있고, 가담 정도가 양형요소로 감안되고 있음

##### ②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

자로 반영함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에서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를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시 규정을 참고
-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일부 사례에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점을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거침입 등 범행이 반복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실제 사례가 다수 조사됨
- 주거침입죄는 강요,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상습범이 가중 처벌되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강요, 손괴죄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습범'을 별도의 가

중인자로 규정하는 대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상습범에 해당할 수 있는 반복적 범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침입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④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갈, 방화, 체포·감금·유기·학대, 강요,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상당수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를 불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음.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 성범죄,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나 추가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
  - 성적 욕구충족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sup>1)</sup>
-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1)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범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⑥ 동종 누범

- 폭력,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다) 일반감경인자

① 소극 가담

- 살인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과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 사이에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함

는 이유로 특별가중을 하게 되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괄호 부분을 두어 적용범위를 제한함.

-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두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정의 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일반가중인자**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기본범죄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정하되, 공동범행에 따라 불법성이 가중되는 사정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② 계획적인 범행**

-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정의 규정도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③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 인자로 반영함

(3) 반영하지 않음에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신체수색·자동차수색

-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소유형 3(주거신체수색)의 권고 형량범위를 소유형 1(주거침입)과 소유형2(퇴거불응)의 권고 형량범위 전부를 포섭할 수 있도록 넓게 설정하되, 신체수색·자동차수색의 경우 주거 등 수색과 비교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는 방안을 전문위원단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체수색·자동차수색을 별도의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전문위원단의 의견이 일치됨
  - 신체수색은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충격, 개인에 대한 직접적 범의 침해성 등을 고려할 때, 언제나 주거 등 수색보다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자동차수색 역시 현대인의 생활특성상 중요한 정보나 물건이 자동차 내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선고형량도 건조물수색 등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수색의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 일률적으로 감경하는 방식보다는 '주거 등 평온 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특별 감경인자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

적임 ⇨ 양형실무 역시 신체수색·자동차수색 사안에서 보호 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이해됨

- 만약 소유형3에서 수색의 대상만을 기준으로 그중 일정한 경우를 별도의 감경인자로 반영한다면, 이에 대응하여 소유형1 주거침입이나 소유형2 퇴거불응에 있어서도 침입이나 퇴거불응의 대상을 기준으로 일정한 경우(예를 들어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여야 체계상 정합성이 유지됨. 그러나 양형실무상 감경인자로 반영할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방안은 양형실무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움

#### (4)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 (가) 특별감경인자

###### ①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 판결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음
- **신체의 일부만 침입** : 창문에 손만 집어넣은 경우, 쇠창살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뺀 경우 등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절도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경우 이를 독립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대문 안, 현관 출입문 앞에서 침입 시도 중 발각된 경우, 다가구 주택 내부 공용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주거 침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

-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 : 고시원 총무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실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항의를 받고 즉시 퇴거한 경우, 열쇠를 이용하여 전에 살던 집에 침입한 직후 발각되자 스스로 집에서 나온 경우 등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낙찰 받은 건물에 남아 있는 점유자의 집기를 반출하기 위해 침입한 경우 등

○ 양형인자의 정의

㉠ 의견이 일치된 부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sup>2)</sup>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sup>3)</sup>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쟁점)**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쟁점)** 표시 부분을 양형인자의 정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다수 의견(11인)** : 주거 등 침입 당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

2)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신체 일부의 침입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함.

3) 주거에 침입한 이상 범행이 기수에 이르므로 범행 발각 후 퇴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경하기보다는, 주거 등 체류 시간이 매우 짧은 예외적 사례에 한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함.

은 경우에는 현존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법성이 낮고, 행위의 위험성 역시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 표시 부분을 양형인자 정의에 포함함이 타당

- 소수 의견(2인) :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침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예를 들어, 절도 목적 주거침입)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므로,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의 범행을 주거침입범죄의 기본적·전형적 유형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쟁점) 표시 부분을 양형인자 정의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

## ②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

### ○ 다수 의견(10인)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표현

- 최근 개정된 형법(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에서는, '농아자'를 대신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또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비록 개정 형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에서 사용되는 양형인자의 표현을 순화한다는 의미에서 개정 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도적으로 사용함이 타당

#### ※ 개정 형법(2021. 12. 9. 시행 예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 소수 의견(3인) : '농아자'로 표현

- 개정 형법은 1년 뒤인 2021. 12. 9. 시행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현행 형법상 용어인 '농아자'를 그대로 사용함이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바람직함
- 추후 개정 형법이 시행되면, 그때 대부분 양형기준에 포함된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또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일괄 수정하는 방안이 타당함

③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은 개인적 범익을 보호범익으로 하는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음. 그에 따라 '처벌불원' 자체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에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됨
-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라는 문구를 병기할 것인지, 정의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에 관하여 전문위원단 의견이 나뉨

㉔ 다수 의견(10인)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문구를 병기하고,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상 기존의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 처벌불원의 적용 범위 축소는 '처벌불원'이라는 양형요소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성범죄의 특유한 고려 사항이고, 주거침입 범죄는 그와 성격이 다르기에 성범죄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피해자가 부당하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나아가 합의에 준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이는 처벌불원과 동등한 효과를 부여함이 타당
- 다수 의견에 따를 경우 정의 규정

<p>-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p>
--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㉔ 소수 의견(3인)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문구를 제외하고, 디지털 성범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의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정의 규정 사용

-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는 행위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상 ‘양형인자의 평가원칙’에 따라 행위인자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적용이 보다 엄격한 요건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진정한 의미의 처벌불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합의 노력을 양형상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 주거침입이 성적 목적일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등에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제기된 ‘처벌불원’에 관한 비판이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함
- 소수 의견에 따른 경우 정의 규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

특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④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 ㉞ 다수 의견(11인) : 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주거침입죄는 강요, 손괴죄와 함께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상습범이 가중 처벌되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강요, 손괴죄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습범'을 별도의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이와 동일하게 양형인자를 정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통일성, 정합성 등의 차원에서 바람직함
- 상습범에 해당할 수 있는 반복적 범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습범 그 자체를 독립적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없음. 오히려 독립적인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되면, 이중평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㉔ 소수 의견(2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비록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양형에서 상습범을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함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행위요소이고 상습은 피고인의 습벽으로서 행위자요소에 해당하므로, 위 두 요소를 별개의 가중인자로 반영하더라도 이중평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2.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가. 유형 분류 / 권고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105차, 제106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10월	6월-1년2월	1년-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1년	8월-1년4월	1년2월-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6월

### 나. 검토 결과

#### (1) 요약

- ※ 강조 표시 부분은 의견 불일치(대유형 1과 동일 논의는 표시 제외) 또는 대유형 1과 논의가 달라지는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u>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또는 내부 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u>1유형</u>)</li> <li>• 상습범인 경우</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유형 1과 동일한 서술식 기준 추가

(2) 대유형 2에 고유한 양형인자(대유형 1과 논의가 다른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① 다수 의견(9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퇴거불응의 경우 주거침입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대유형 1(일반적 기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주거침입보다 낮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 비록 대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에서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동일한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 자체는 같게 정하였으나, 양형통계상 차이와 불법성의 정도 차이를 반영하여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㉔ 소수 의견(4인) :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대유형 1(일반적 기준)과는 달리 대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된 불법성이 있고, 그 행위태양이 침입인지 퇴거불응인지는 부수적인 양형요소에 불과함

(나)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대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 중 소유형2(누범주거침입 등), 소유형3(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 이미 누범이라는 요소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한 후 권고 형량범위를 높게 정하였으므로, '동종 누범'을 다시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대유형 1(일반적 기준)과 달리 대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에서는 '동종 누범'의 적용 범위를 소유형 1(특수주거침입 등)로 한정하고, 이와 같은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양형인자의 표시를 '동종 누범(1유형)'으로 함

### 3.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 가.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양형인자 부분과 검토 결과가 동일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b>3회 이상 벌금</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li> <li>○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li>○ 약물중독, 알콜중독</li> <li>○ 계획적인 범행</li> <li>○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우발적인 범행</li> <li>○ 자수 또는 내부 고발</li> <li>○ 진지한 반성</li> <li>○ <b>상당 금액 공탁</b></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b>피고인이 고령</b></li> <li>○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사유

### (1)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중 벌금 부분

-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만 검토되었으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범죄에 있어서도 '동종 전과'와 관련하여 ① '3회 이상 벌금'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②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할 것인지가 문제됨
- 참고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에서는, ① '3회 이상 벌금'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9인)과 ② 별도의 문구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8인)이 각각 다수 의견이었음 ☞ 상세한 검토 내용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해당 부분에 정리됨

### (2) 상당 금액 공탁

- 다수 의견(8인) : '상당 금액 공탁'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지 않음
  -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요소로서 주거침입범죄의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소수 의견(5인) : '상당 금액 공탁'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유사한 성격의 범죄인 손괴 범죄,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로는 반영하지 않은 '상당 금액 공탁'을 집행유예 기준에서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였으므로 그와 통일성 있게 규정

### (3) 피고인이 고령

#### ○ 다수 의견(8인) : '피고인이 고령'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형법상 형 집행 정지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고(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2호), 고령으로 구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사정은 집행유예 여부의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 디지털 성범죄에서와 달리, 주거침입범죄에서는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참작사유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음

#### ○ 소수 의견(5인) : '피고인이 고령'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지 않음

- 고령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사정이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음
- 형 집행 정지사유로 규정되었다는 사정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반영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음
- 디지털 성범죄와 차등을 두어 '피고인이 고령'을 집행유예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부족함

## 4. 기타(절도죄와 경합범인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례) 검토 결과

-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대유형 1(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소유형 4(침입절도)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함. 그런데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음(2020 양형기준 책자, 147쪽)

- 이는 주거침입죄를 수반하는 일반 절도죄를 '침입절도' 유형으로 포섭하여 주거침입죄를 수반하지 않는 절도죄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주거침입의 불법성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양형요소가 이중으로 평가되는 위험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임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에도 절도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침입절도' 유형에 규정된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 있음
-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함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Ⅲ.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중 소유형 명칭 변경

#### 1.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 심의 결과

- 2020. 10. 23. 제10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환경범죄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와 소유형 명칭은 아래와 같음

#### 01<sup>1</sup>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3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4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02<sup>1</sup>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 03<sup>1</sup>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 등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분뇨 등 무단배출			

## 04<sup>1</sup>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05<sup>1</sup>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2.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 시 보고된 소유형 명칭 변경안

- 2020. 12. 7.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환경범죄 양형기준 중 소유형 명칭 변경안을 보고함

## 01<sup>1</sup>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3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4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 ▷ 건설폐기물법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건설 폐기물처리업)는 2유형에, 같은 법 제63조 제1호 위반죄(처리기준 위반하여 주변환경 오염)는 3유형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위반죄(미신고 폐기물처리 등)는 4유형에 각 포섭

## 02<sup>1</sup>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는 1유형에, 같은 법 제90조 제2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는 2유형에 각 포섭

## 03<sup>1</sup>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3호 위반죄(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배출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78조 제3호 위반죄(분뇨·가축분뇨 등 무단배출)는 4유형에 각 포섭

#### 04<sup>1</sup> 해양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의 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2	선박·해양시설에서의 폐기물 무단배출 /과실에 기한 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05<sup>1</sup> 가축분뇨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2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			
3	신고한 배출시설에서의 무단배출 등/과실에 기한 무단배출 등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위반죄(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2유형에, 같은 법 제50조 제4호 위반죄(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 등)는 3유형에 각 포섭

### 3.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 시 요청사항 검토 결과

- 2020. 12. 7.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단에, ①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의 소유형 명칭을 축약하여 설정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두 나타내는 방안, ② 처벌규정의 각 호별로 소유형 포함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는 방안 등에 관하여 추가 검토 요청이 있었음
- 검토 결과, 전문위원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06차 양형위원회에 이미 보고된 제2항에 적힌 '소유형 명칭 변경안'이 보다 편리하고 실용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음
  -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여 동일한 소유형에 매우 다양한 행위유형이 존재함. 설정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두 축약하여 소유형 명칭에 반영하게 되면 소유형 명칭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게 되고, 소유형 명칭을 인용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발생함. 매우 다양한 행위유형이 존재하는 식품·보건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그 소유형 명칭에 이에 포함되는 모든 범죄가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음
  - 대표적인 행위유형을 소유형 명칭으로 사용하면서도, 권고 형량범위표 바로 아래에 각각의 소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알 수 있는 서술식 문구를 추가하면 양형기준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데 혼선이 생기지 않고 편리함. 성범죄, 위증·증거인멸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등에서 서술식 문구로 소유형의 포섭 범위를 특정함
  - 환경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는 향후 양형기준 수정 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제2항에 적힌 소유형 명칭 변경안이 보다 실용적임. 즉 제2항에 적힌 소유형 명칭 변경안을 선택할 경우 각 소유형의 서술식 문구 부분에 확대 설정되는 범죄를 추가로 적으면 충분함. 그러나 각 소유형 명칭에 설정 대상이 되는 범죄를 압축하여 모두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설정 범위가 변경될 때마다 이에 맞추어 소유형 명칭을 다시 변경하여야 함

- 다만 전문위원단에서는 양형위원회에서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의 양형기준에 있어서 소유형 명칭을 수정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음 ☞ 나머지 대유형은 종전에 보고된 수정안 유지
- 소유형 명칭을 축약하여 ‘구분’란에 설정 대상이 되는 범죄 중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표시
- 처벌규정의 각 호별 소유형 포함 여부는 양형기준의 ‘유형의 정의’ 부분 및 표지(적용범위) 부분에 상세히 규정되므로, 서술식 문구는 사용하지 않음

## 02<sup>1</sup> 대기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del>조업</del> 등/오염방지시설 미설치· <del>파기</del> 등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del>조업</del> 등/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del>등</del> 설차장치 등 설치			

## 03<sup>1</sup> 물환경 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del>조업</del> 등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del>조업</del> 등/오염방지시설을 <del>거치지</del> <del>아니하는</del> 배출행위 등 우회배출 등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4	업무상 과실 <del>또는</del>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del>무단</del> 배출/분뇨 등 무단배출			

## IV. 환경범죄 양형기준안 중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1. 대유형 1 ‘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가. 유형 분류 / 권고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105차, 제106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sup>4)</sup>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하여 폐기물 매립 등	- 8월	6월 - 1년	10월 - 2년
4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미신고 폐기물처리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나. 검토 결과

#####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b>과실범</b></li> <li>• <b>단순 가담</b></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b></li> <li>• <b>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b></li>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li> </ul>

4) 소유형 명칭 변경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제105차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소유형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다른 대유형도 마찬가지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u></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u>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u>상습범인 경우</u></li> </ul>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이득액이 경미한 경우</u></li> <li>• <u>소극 가담</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li> <li>• <u>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u></li> <li>•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u>계획적인 범행</u></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2)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가) 특별감경인자

#### 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행위불법이 가벼우므로 환경범죄에서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미신고 배출장치의 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공장을 인수하여 조업을 계속한 사례, 집중호우로 공사현장이 유실되면서 유해물질이 유출된 사례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경우 있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③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

-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결과 불법

이 현저히 작은 점, 양형기준에서 '피해(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는 범죄군(재산범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이 있는 점,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실제 사례에서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신고절차만을 누락한 때, ㉡ 폐기물관리법이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차수막과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된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의 토양 유출 위험성이 거의 없었던 때, ㉢ 기준을 위반하여 살포한 액비가 오히려 피고인이 경작하는 농장의 비료로 사용된 때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음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오염방지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단순 부주의로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만을 누락한 경우
- 오염물질을 완벽히 밀폐되거나 분리된 장소 등에서 처리하여 외부 유출 위험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④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두지 않음
  - 환경범죄의 특성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의 범행이 일어나는 사례는 상정하기 쉽지 않음
  - 식품·보건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등 다수의 양형기준에서도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음

**⑤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수, 내부 고발”에 관하여는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함
- 조직적 범행 양상을 떨 수 있는 환경범죄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죄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함.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자수, 내부 고발”과 동등하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나) 특별가중인자**

**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사기범죄, 공갈범죄, 폭력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환경범죄의 경우 공범 비율이 높고 지시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기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②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결과 불법이 현저히 크므로,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양형인자의 정의를 참조하되, 개별적으로 가중인자로 반영되는 요소는 제외함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 심각한 수준의 동·식물 폐사
  -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 폐기물관리법은 사업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지정폐기물'로 정의하고(제2조 제4호) 그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유해성이 특히 높은 지정폐기물을 무단투기·매립·소각·처리하는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함. 실제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이라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이 확인됨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④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행위를 가중 처벌함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환경보호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또는 섬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자연유보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정도서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마.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 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 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차.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카.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가중 처벌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환경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된 일반 환경범죄를 ‘환경보호지역 내에서’ 범한 경우 상대적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다) 일반감경인자**

**①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과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 사이에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두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sup>5)</sup>

### [정의 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일반가중인자

### ①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

- 환경범죄는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실제로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들고 있는 하급심 판결이 상당수 있음
- 배출행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는 측면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행위자 입장에서 얻은 이익이 많다는 측면은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5) 환경범죄는 ‘피해자’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

②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식품·보건범죄, 조세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환경범죄도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기, 횡령·배임, 공문서, 식품·보건, 증권, 선거, 변호사법위반, 게임물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환경범죄도 최초 단속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범죄 혐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속 후 증거은폐 가능성이 높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④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3)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① 과실범

- '과실범'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 ㉞ 다수 의견(9인) :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대유형1(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고, 그럼에도 과실범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과실범'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물론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그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실범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새긴 판례(대법원 2008도743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가 있기는 함
- 그러나 이 판례의 법리를 환경범죄 전반에 걸쳐서 일반화하는 것은 자칫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더욱이 환경범죄 중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범죄, 가축분뇨 범죄의 경우 동일한 행위유형에 대하여 고의 범행과 업무상과실/중과실 범행을 구분하여 각각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예를 들어 물환경범죄의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행위) 후자의 법정형을 전자보다 낮게 정함. 만약 고의범 처벌규정이 당연히 과실범에도 적용된다고 새기게 되면, 경과실의 법정형이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보다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
- 아직 대법원의 법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학계의 비판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법리의 확정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과실범'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면, 양형위원회가 환경범죄 전반에 걸쳐 고의범 처벌규정이 과실범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법리를 취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함

㉠ 소수 의견(4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그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실범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로 새긴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환경범죄의 경우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과실범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해됨

-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을 행위불법이 가볍다는 측면에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보다 행위불법이 더 가벼운 '과실범' 역시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함이 타당함

## ② '단순 가담'(특별감경인자) v. '소극 가담'(일반감경인자)

-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경우 이를 감경인자로 봄에는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됨. 다만, 감경인자의 질적 구분과 표현 방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 ㉠ 다수 의견(8인) : '단순 가담'(특별감경인자)

- 사기, 사행성·게임물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등 공범 비율이 높은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단순 가담'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환경범죄는 공범 비율(30.7%)이 높고, 지시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주범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주범과의 가별성 차이가 크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자의 역할, 범행가담의 정도와 태양이 다양하므로, 그 가별성을 구분할 필요성 있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면, 그에 대칭되는 양형요소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합리적임
- 양형인자의 정의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㉔ 소수 의견(5인) : '소극 가담'(일반감경인자)

- 살인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 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면서, 그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기본적인 가담 정도로 특별가중인자나 특별감경인자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다만 그 가담 정도가 낮아 '소극 가담'에 이른다면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이 합리적임
- 양형인자의 정의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

-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의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와 같음
- 다만 표결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숫자가 변동되어, 다수 의견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찬성한 전문위원은 10인, 소수 의견인 '농아자'에 찬성한 전문위원은 2인임

④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v. 일반감경인자

-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 유해식품,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경우 '적발 후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경우'를 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음
- 환경범죄 판결에서 '적발 후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경우'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어, 감경인자로 반영함에는 전문위원단 의견 일치. 다만 감경인자의 위상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7인) : 일반감경인자

- 식품·보건범죄 중 허위표시, 유해식품,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중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경우 '적발 후 시정조치 등을 취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의 균형, 시정조치 또는 원상회복조치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적발 후 시정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과도함

㉡ 제2 의견(6인) : 특별감경인자

- 환경범죄에서는 무엇보다 시정조치 또는 원상회복조치가 절실하므로, 양형기준을 통하여 시정조치 또는 원상회복조치를 강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피해 회복의 측면에서 개인적 법익 보호 범죄의 '처벌불원'에 대응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개인적 법익 보호 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을 모두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나) 특별가중인자

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1 의견(7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횡령·배임, 증거인멸·증인은닉, 사기, 증권·금융범죄, 공갈,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도주·범인은닉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대규모 또는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㉞ 제2 의견(5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환경범죄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적합하지 않고, 그러한 취지에서 식품보건범죄에서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다른 특별가중인자(예를 들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통해서 불법성의 정도가 큰 사정을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음

㉟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특별가중인자) v. '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일반가중인자)

- 배출량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긴 경우 이를 가중인자로 봄에는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됨. 다만, 가중인자의 질적 구분, 표현 방식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

㊱ 다수 의견(8인) : '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일반가중인자)

- 배출량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이를 가중인자로 볼 필요는 있으나, 이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요소가 다수 있음('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 등).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이 균형에 맞음

㉔ 소수 의견(4인)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특별가중인자)

-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체포·감금, 강요, 업무방해,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굳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위상을 낮출 필요가 없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③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가중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㉕ 다수 의견(10인) : 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영업범의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범이면서 상습범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도 난점이 있음
- 상습범적 요소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나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등 환경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한 특별가중인자를 통하여 양형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음

㉖ 소수 의견(2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환경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일반감경인자 및 일반가중인자)

①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일반감경인자)

-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 다수 의견(10인) :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환경범죄의 경우 경제적 이익의 취득이나 그와 같은 목적이 구성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득액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 영역에 포섭되도록 하되, 다만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에 한하여 가중을 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 소수 의견(2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환경범죄는 경제적 동기에서 통상 발생하고,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이상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이 균형에 맞음

② 계획적인 범행(일반가중인자)

-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불일치

㉠ 다수 의견(9인) : 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환경범죄는 계획적인 범행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가중인자로 반영하면 대부분 범죄에 대하여 가중을 권고하는 셈이 되어 적절하지 않음
- 만약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게 되면, 그 정의규정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소수 의견(3인) : 일반가중인자로 반영

- 환경범죄에서도 계획적인 범행이라면 가중 처벌함이 타당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의 계획적인 범행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2. 대유형 2 ‘대기환경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가. 유형 분류 / 권고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105차, 제106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시설을 우회하는 공기조절장치 등 설치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 나. 검토 결과

#### (1) 요약

※ 강조 표시 부분은 대유형 1과 논의가 달라지는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과실범</li> <li>• 단순 가담</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li> <li>• <u>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u></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상습범인 경우</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li> <li>• 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li> <li>•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2) 대유형 1에서 논의되지 않은 양형인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에 의견 일치**

- 대기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9호) 그 관리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해성이 특히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범행의 위험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3. 대유형 3 ‘물환경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 / 권고 형량범위

- 양형위원회 제105차, 제106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4년
2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조업/오염방지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는 배출행위 등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3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	- 8월	6월-1년	10월-2년
4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기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배출/분노 등 무단배출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나. 검토 결과

### (1) 요약

※ 강조 표시 부분은 대유형 1, 2와 논의가 달라지는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과실범(<u>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위반은 제외</u>) v. <u>경미한 과실로 범행한 경우</u></li> <li>• 단순 가담</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상습범인 경우</li> </ul>
일반양형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li> <li>• 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li> <li>•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인 자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지한 반성</li> <li>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2) 대유형 1, 2에서 논의되지 않은 양형인자 : 과실범(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위반은 제외) v. 경미한 과실로 범행한 경우 ⇨ **의견 불일치**

- 대유형 1(폐기물·건설폐기물범죄)과 대유형 2(대기환경범죄)에서의 양형인자 '과실범'에 관한 논의는 해당 대유형에 포함되는 범죄에 관하여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과실범'이라는 사정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할지 여부에 관한 것임
- 그런데 대유형 3(물환경범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6)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이 대유형 3에 포함되어 있어 논의의 전제 사항이 대유형 1, 2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음
- 과실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대유형 3에 있어서 과실범에 관한 양형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6)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단의 의견이 나누어짐

㉔ 다수 의견(7인) : 과실범 관련 사항은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대유형 3(물환경범죄) 중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관한 논거는 대유형 1, 2에서와 마찬가지로임
- 대유형 3(물환경범죄) 중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범죄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만 처벌되고, 업무상과실이 아닌 과실 또는 경미한 과실은 처벌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음. 따라서 '경미한 과실'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불필요함
- 설령 업무상과실을 이유로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경미한 과실이 존재할 수 있더라도,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에 불과하여 업무상과실 중 경미한 과실과 그렇지 않은 과실을 구분하여 처벌할 실익이 크지 않음

㉕ 제1 소수 의견(3인) : '과실범(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위반은 제외)'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대유형 3(물환경범죄) 중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범죄에 관한 논거는 대유형 1, 2에서와 마찬가지로임
- 대유형 3(물환경범죄) 중 과실범을 처벌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범죄(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는 이미 고의범보다 법정형이 낮게 정해져 있으므로 과실범이라는 사정을 다시 감경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감경인자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과실범(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위반은 제외)'으로 표시

㉔ 제2 소수 의견(2인) : '경미한 과실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고의범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대칭을 이루어 과실범이 처벌된다면 '경미한 과실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 4. 대유형 4 '해양환경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가. 유형 분류 / 형량 범위

- 양형위원회 제105차, 제106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선박·해양시설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무단배출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선박·해양시설에서 폐기물 무단배출/과실에 기한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배출	- 8월	6월-1년	10월-2년
3	과실에 기한 폐기물 배출	- 6월	4월-10월	8월-1년6월

##### 나. 검토 결과

※ 강조 표시 부분은 대유형 1~3과 문구가 다른 부분

>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양 형 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과실범(<a href="#">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128조 제1호 위반은 각 제외</a>) v. 경미한 과실로 범행한 경우</li> <li>• 단순 가담</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상습범인 경우</li> </ul>
일 반 양 형 인 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li> <li>• 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li> <li>•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5. 대유형 5 ‘가축분뇨범죄’의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가. 유형 분류 / 형량 범위

- 양형위원회 제105차, 제106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유형 분류와 권고 형량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허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10월	8월 - 1년2월	1년 - 2년6월
2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미신고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3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미신고 배출시설 설치·가축사육/신고한 배출시설에서 가축분뇨 등 공공수역 유입·중간배출 등	- 4월	2월 - 8월	6월 - 10월

### 나. 검토 결과

※ 강조 표시 부분은 대유형 1~4와 문구가 다른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과실범(<a href="#">가축분뇨법 제50조 제3, 6, 9호 위반은 각 제외</a>) v. 경미한 과실로 범행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li> </ul>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가담</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li> </ul>	<p>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li>• 상습범인 경우</li> </ul>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li> <li>• 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li> <li>•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li>• 계획적인 범행</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li> </ul>

## 6.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 가.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양형인자 부분과 검토 결과가 동일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li> <li>○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li> <li>○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li> <li>○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의 경우)</li> <li>○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한 경우(대기환경 범죄의 경우)</li> <l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b>3회 이상 벌금</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li> <li>○ 과실범(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128조 제1호 위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 6, 9호 위반은 각 제외)</li> <li>○ 단순 가담</li> <li>○ 환경오염 발생의 위험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다액인 경우</li> <li>○ 배출시설규모·배출량이 상당하거나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li> <li>○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li> <li>○ 단속 후 시정조치를 하거나 오염제거 등 원상회복을 한 경우</li>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ul>

구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적인 범행</li> <li>○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진지한 반성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진지한 반성</li> <li>○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li>○ <u>피고인이 고령</u></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li> </ul>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사유

(1)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중 벌금 부분

-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만 검토되었으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와 마찬가지로 환경범죄에 있어서도 ‘동종 전과’와 관련하여 ① ‘3회 이상 벌금’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②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할 것인지가 문제됨
- 참고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는, ① ‘3회 이상 벌금’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9인)과 ② 별도의 문구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8인)이 다수 의견이었음 ☞ 상세한 검토 내용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해당 부분에 정리됨



## (2) 피고인이 고령

- 주거침입범죄에서의 논의 내용과 같음
- 다만 표결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숫자가 변동되어, 제1 의견인 '피고인이 고령'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데 찬성한 전문위원은 6인, 제2 의견인 이를 제외하자는 데 찬성한 전문위원은 5인임

## V.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심의 내용

- 2020. 12. 7. 제106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중 산업안전보건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는 아래와 같음

#### 가. 범죄군 명칭

- 「과실치사상범죄」을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로 변경함

#### 나. 설정 범위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제166조의2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제166조의2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준용하는 경우 포함)]
-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다. 유형 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	--	--	--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2. 권고 형량범위 검토 결과

### ■ 고려 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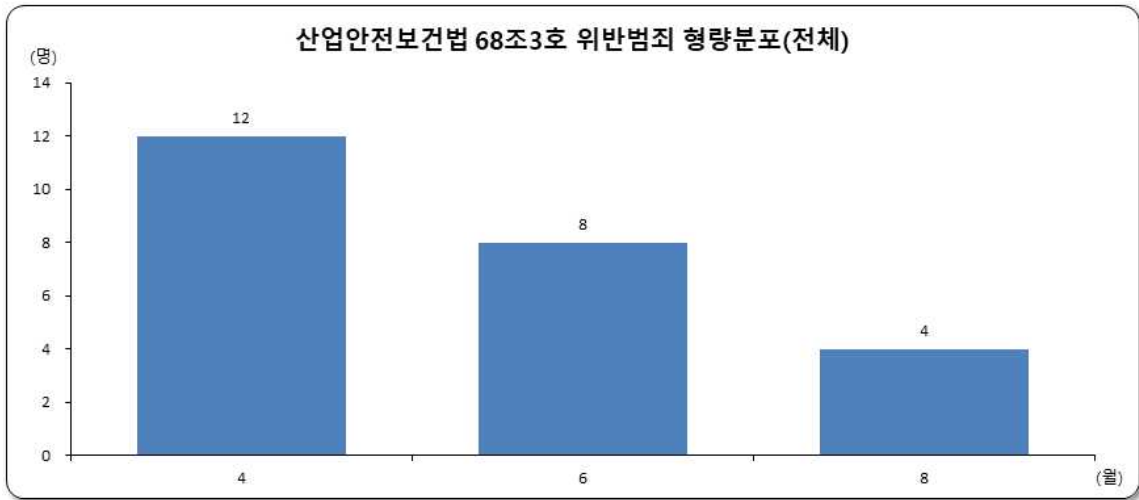
### 가. 소유형 1(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1) 형량 분포<sup>7)</sup>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음

7)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II (2020. 9. 14.)를 근거로 하되, 실제 해당 판결문을 찾아 통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제시함. 이하 통계는 모두 같음.

세부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4	6	8		
제29조 제3항	제63조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전체		12	8	4	24	5.33
		50.0%	33.3%	16.7%	100%	



(2) 법정형 동일(징역 3년 이하)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5,000만 원 미만	-6월	4월-8월	6월-1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8월	6월-1년	8월-1년6월
		1억 원 이상	6월-1년	8월-1년6월	1년2월-2년6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이자율 제한 위반 등	-6월	4월-10월	8월-2년
	채권추심법 위반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6월	4월-10월	6월-2년
사행성·게 임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등	유사경륜·경정 등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무허가·무등 록 영업	사행행위영업 등	-8월	6월-1년4월	10월-2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전자금융거래 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	-6월	4월-10월	6월-1년2월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8월	6월-1년 6월	10월-2년6월
조세범죄	일반 조세포탈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5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미만	-10월	6월-1년	10월-1년2월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6월-1년	8월-1년2월	1년-2년
		50억 원 이상	8월-1년6월	1년-2년	1년6월-2년6월

(3)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 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 상향된 법정형(1년 → 3년)에 따른 양형 사례가 아직 충분하게 축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하면서 같은 범죄군에 속하면서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서 소유형 1보다 더 높은 대유형 1 과실치사상범죄의 소유형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권고 형량범위 (-6월 / 4월-10월 / 8월-2년)와의 균형을 고려함
- ① 소유형 1은 상해의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같은 대유형 중 소유형3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점, ② 대유형 1 중 소유형 2의 법정형이 더 높으므로 규범적 조정을 가하더라도 가중 영역 상한을 대유형 1 중 소유형2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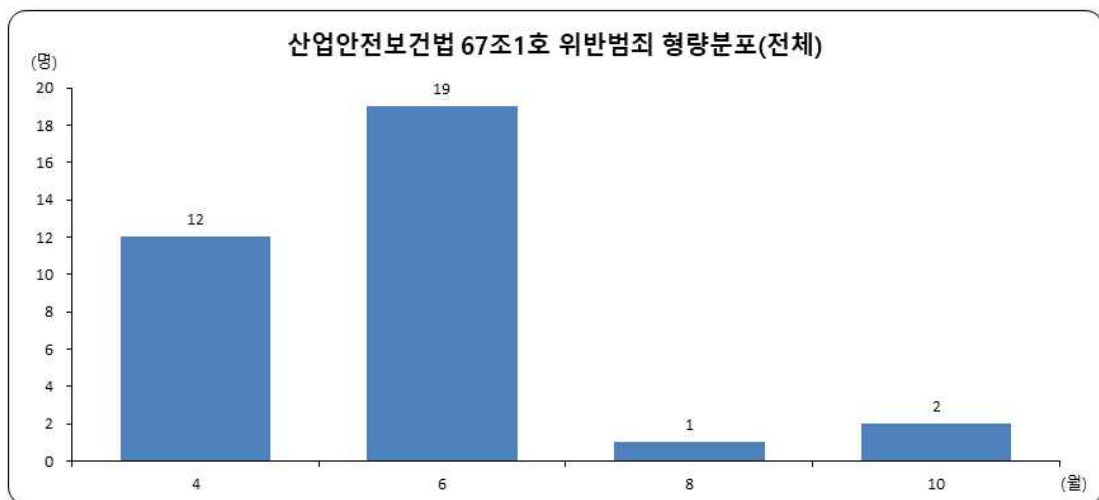
하지 않은 점, ③ 특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1/2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1년 6월로 함

## 나. 소유형 2(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1) 형량 분포

○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음

세부 조항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4	8	10	12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9	10	-	1	20	5.30
		45.0%	50.0%	-	5.0%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1	-	1	-	2	6.00
		50.0%	-	50.0%	-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2	8	-	1	11	6.00
		18.2%	72.7%	-	9.1%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	1	-	-	1	6.00
		-	100%	-	-	100%	
전체		12	19	1	2	34	5.59
		35.3%	55.9%	2.9%	5.9%	100%	



(2) 법정형 동일(징역 5년 이하)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상 범죄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	-6월	4월-10월	8월-2년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	4월-10월	8월-2년	1년-3년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8월	4월-1년	8월-2년
		교통사고 치사	4월-1년	8월-2년	1년-3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강제근로·중 간착취 등	강제근로·중 간착취 등	-8월	6월 -1년	10월 -2년6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미등록 대부업 등	-10월	6월-1년 6월	1년-4년
	채권추심법위 반	폭행, 협박 등 행위	-8월	6월-1년 6월	10월-3년 6월
변호사법위 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3,000만 원 미만	-6월	4월-10월	6월-1년6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	8월-1년6월	1년-2년6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월-2년	1년-2년6월	2년-3년6월
		1억 원 이상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석유사업법 위반범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5만 리터 미만	-6월	4월-10월	8월-1년6월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4월-10월	8월-1년6월	1년-3년
		50만 리터 이상	8월-1년6월	1년-3년	2년-4년

(3)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사업주의 안전·보 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 같은 범죄군에 속하면서 법정형이 동일한 대유형 1 과실치사 상범죄의 소유형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권고 형량범위 (-6월 / 4월-10월 / 8월-2년)를 참고하되, 같은 대유형 중 법정형이 낮은 소유형 1과의 차등 필요성,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대유형 1 중 소유형 2의 권고 형량범위를 전체적으로 상향함
- ① 소유형 2 역시 상해의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서, 만약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경합범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같은 대유형 중 소유형3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점, ② 특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영역 상한이 1/2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가중영역 상한을 2년 6월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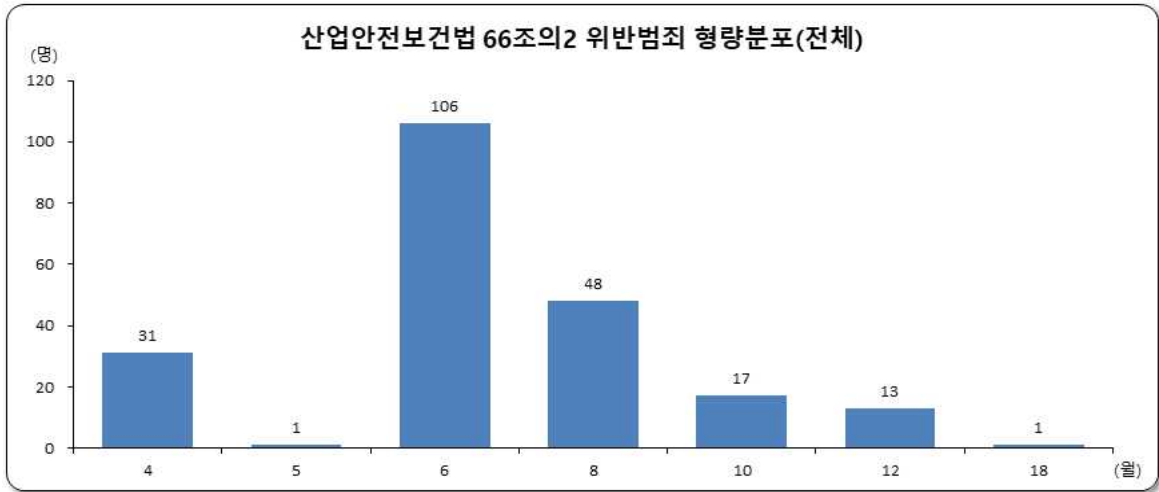
다. 소유형 3(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1) 형량 분포

(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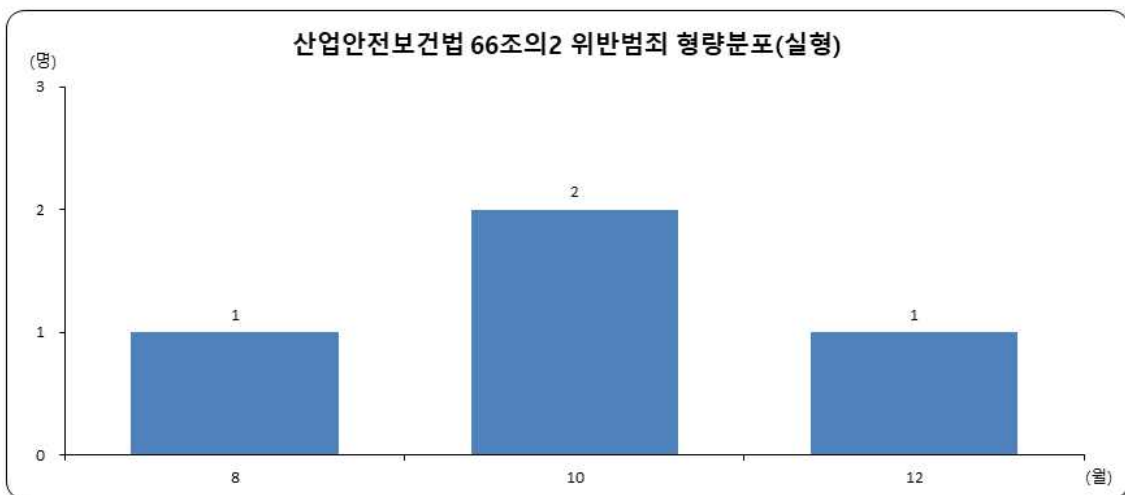
세부 조항		전체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5	2	0	49	6.82
		18.4%	0.0%	40.8%	26.5%	10.2%	4.1%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3	7	6	0	100	6.82
		14.0%	0.0%	50.0%	23.0%	7.0%	6.0%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b>31</b>	<b>1</b>	<b>106</b>	<b>48</b>	<b>17</b>	<b>13</b>	<b>1</b>	<b>217</b>	<b>6.88</b>
		<b>14.3%</b>	<b>0.5%</b>	<b>48.8%</b>	<b>22.1%</b>	<b>7.8%</b>	<b>6.0%</b>	<b>0.5%</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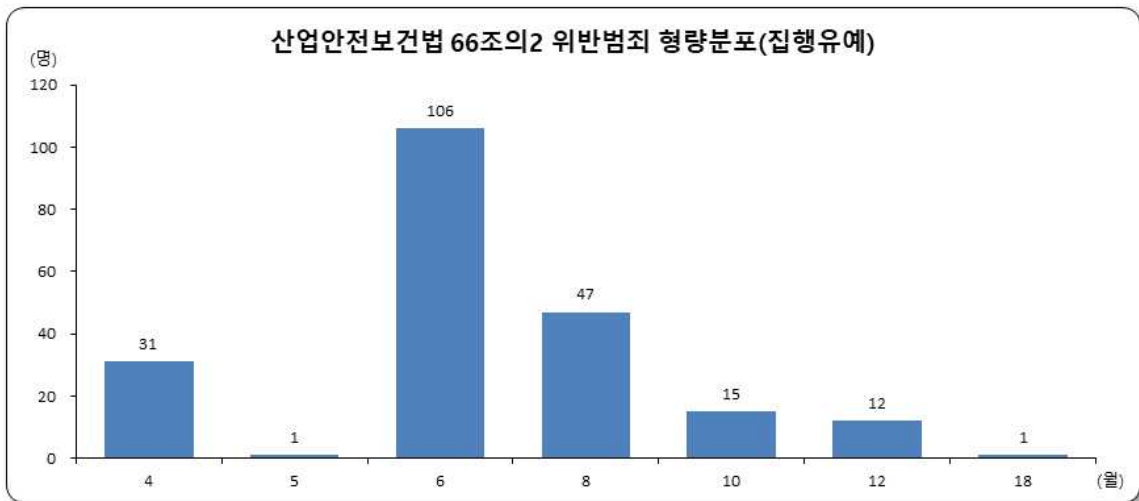
(나) 실행

세부 조항		실행 형량(월)			전체	평균(월)
구법	현행법	8	10	12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0	1	0	1	10.00
		0.0%	100%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	1	1	3	10.00
		33.3%	33.3%	33.3%	100%	
전체		1	2	1	4	10.00
		25.0%	50.0%	25.0%	100%	



(다) 집행유예

세부 조항		집행유예 형량(월)							전체	평균 (월)
구법	현행법	4	5	6	8	10	12	18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8	0	33	12	4	5	1	63	7.05
		12.7%	0.0%	52.4%	19.0%	6.3%	7.9%	1.6%	100%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9	0	20	13	4	2	0	48	6.75
		18.8%	0.0%	41.7%	27.1%	8.3%	4.2%	0.0%	100%	
제23조 제3항	제38조 제3항	14	0	50	22	6	5	0	97	6.72
		14.4%	0.0%	51.5%	22.7%	6.2%	5.2%	0.0%	100%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0	1	3	0	1	0	0	5	6.60
		0.0%	20.0%	60.0%	0.0%	20.0%	0.0%	0.0%	100%	
전체		31	1	106	47	15	12	1	213	6.82
		14.6%	0.5%	49.8%	22.1%	7.0%	5.6%	0.5%	100%	



(2) 법정형 동일(징역 7년 이하)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과실치사상 범죄	-	산업안전보건 법위반	4월-10월	6월-1년6월	10월-3년6월
권리행사방 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4월-1년	8월-1년6월	1년-3년

범죄군	대유형	소유형	감경	기본	가중
변호사법위 반범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 무 취급·동 업 등	1,000만 원 미만	-4월	2월-8월	6월-1년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4월-8월	6월 -1년	10월-2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1년6월	10월-2년	1년-3년6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6 월	2년6월-5년
		1억 원 이상	2년-4년	3년-6년	4년-7년
사행성·계 입물범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유사스포츠도 토	4월-1년	8월-2년	1년6월-4년

(3) 권고 형량범위 논의 결과 ⇨ 의견 일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치사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참고 : 기존 권고 형량범위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만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되도록 함
-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종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에 상당한 규범적 조정을 가하여 보다 더 엄정한 형량범위를 권고
- 현행 기본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6월-1년6월)는 소유형3보다 법정형이 낮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5년 이하 징역)의 기

본 영역상 권고 형량범위(8월-2년)보다도 낮으므로 상향 필요

- 소유형 3은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므로, 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의 폭을 다소 넓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한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아가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법정형 상한(7년)이 완전하게 포섭될 수 있도록 함

#### 라. 결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6월	4월 - 10월	8월 - 1년6월
2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4월 - 8월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3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5년

-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3. 양형인자 검토 결과

#### 가. 대유형 1(과실치사상범죄)

##### (1) 검토 필요성

- 기존 과실치사상범죄군에 포함되어 있던 산업안전보건범죄가 별도의 대유형으로 독립하면서, 대유형1 과실치사상범죄와 대유형2 산업안전보건범죄는 별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하게 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범죄와 산업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범죄의 경합범이 되므로, 대유형 1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도 적용됨. 이에 따라 대유형 1 과실치사상범죄에도 산업안

전보건범죄와 관련된 양형요소를 존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대  
유형 2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 중 공통되  
는 부분을 대유형 1 과실치사상범죄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  
존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양형인자 중 표현을 수정하거나 보완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함

## (2)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기존 양형인자표와 달라지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u></li> <li>○ <u>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u></li> <li>○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li> <li>○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u>범행에 취약한 피해자</u></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u></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u>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u></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당 금액 공탁</li> <li>○ <u>보험 가입</u></li> <li>○ 진지한 반성</li> <li>○ <u>형사처벌 전력 없음</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li> </ul>

### (3) 기존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양형인자 중 변경 부분

#### (가)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실질적 피해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범죄 중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정의<sup>8)</sup>를 참고하여, 정의 규정 수정(수정된 부분은 강조 표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②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정의 규정]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양형위원회, 양형기준(2020), 50쪽.

### ③ 증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기존 정의 규정 중 '심한 추상 장애' 부분은 한글로만 적혀 있어서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우므로, '추상'에 한자를 병기함
- 수정된 정의 규정(추가된 부분은 강조 표시)

치료 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醜相) 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 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삭제 여부 및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정의 규정 수정 여부

- 제1 의견(6인)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유지하되, 그 정의 규정만 일부 수정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연관되는 것을 의미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피고인·피해자 외의 제3자 또는 객관적인 사정이 사고 발생에 연관되는 것을 의미함. 양자는 양형상 고려되는 측면이 다르므로, 이를 통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사건에서도 '과실상계', '피해자 측 과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표현은 객관적·중립적 용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양형인자 수정은 타당하지 않음

- 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는 등 사고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릴 수 없을 상황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서 제외 되도록 정의 규정을 수정(추가된 부분은 강조 표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기존 양형기준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양형인자의 정의도 존치함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2 의견(5인)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삭제하고, 그 정의 규정을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흡수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이외의 사정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연관된 것을 의미하는 사후적 평가 개념임. 따라서 양형 과정에서 반드시 양자를 분리하여 취급할 필요는 없음
- 오히려 특별가중인자보다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많고, 통계상으로도 특별감경인자 적용이 빈번하여 감경 영역에 치우쳐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특별감경인자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함
-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용어를 양형인자에서 사용하는 현재의 표현 방식은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를 탓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삭제하고, 그 정의 규정의 내용을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흡수 반영함.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수정된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음(추가된 부분은 강조 표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한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필수 안전장치를 끄거나 안전고리를 풀고 작업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시설의 설치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다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을 유발한 경우로서 공동작업자의 과실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②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인자에 관한 논의와 같음
- 다만 표결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숫자가 변동되어, 다수의견인 '청각 및 언어 장애인'에 찬성한 전문위원은 9인, 소수의견인 '농아자'에 찬성한 전문위원은 2인임

## ③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지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

### ㉞ 제1 의견(5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미성년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기에 근로관계에서도 위험, 유해 업무에 대한 취업, 고용을 제한하는 등 특별한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음(근로기준법 제65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용불안이 높기에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지적 장애인은 더욱 그러함

- 미성년자,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일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이들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기존 양형기준상 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제2 의견(5인) : 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일부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취지는,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현저히 커지는 사정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기본적으로 과실범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우연히 결정됨
- 만약 피해자가 과실치사상 범행에 매우 취약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가중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다른 특별가중인자인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이 가능함

④ 보험 가입

- 기존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에서 '보험 가입'은 일반감경인자인데, 그 정의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보험 가입’의 정의 규정 수정 여부 및 방향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 다수 의견(7인) : 보험 가입이 간주되거나 의무 사항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보험 가입이 간주되거나 의무사항인 경우 그 가입 사실을 일반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수정
- 수정된 정의 규정(추가된 부분은 강조 표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입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계 법령에 따라 가입의무가 있거나 가입이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1 소수 의견(2인) : 가입한 보험이 의무 보험인 경우에도 감경인자 적용하되,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관련 사고 보험으로 표시

- 교통사고에 있어서 종합보험만을 감경인자로 반영한 이유는 가입의 자발성/의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전액 또

- 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지 여부의 차이에 있음
- 관련 법령상 매우 영세하여 보험가입을 강제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간주 보험 대상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감경인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의무가입대상자도 자발적 가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이를 유리하게 고려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의무가입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한 양형인자의 적용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불합리함
  - 다만, 현재 정의 규정에 예시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은 해당 보험과 무관한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정의 규정을 수정(변경된 부분은 강조 표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자동차종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㉔ 제2 소수 의견(1인) : 정의 규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의무 사항이고 대부분 가입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반감경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나. 대유형 2(산업안전보건범죄)

### (1)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유형 1과 다른 부분  
(대유형 1과 논의가 동일한 부분은 강조 표시하지 않음)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li> <li>○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u></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u>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u></li> <li>○ <u>(5인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u></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 및 언어 장애인 v. 농아자</li> <li>○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li> <li>○ <u>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u></li> <li>○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단순한 수급인, 피용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해당 위험영역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u></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u></li> <li>○ 보험 가입</li> <li>○ 진지한 반성</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중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li> </ul>

### (2) 반영함에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가) 특별감경인자

①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인과 비교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두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특성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는 범행이 일어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식품·보건범죄, 근로기준범위반범죄, 석유사업범위반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범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범위반범죄 등의 양형기준에서도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범행에 관한 서술식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음

②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수, 내부 고발’에 관하여는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함
- 기업범죄 양상을 떨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 협조가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함.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자수, 내부 고발’과 동등하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나) 특별가중인자

①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대유형 1(과실치사상범죄)에서는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표현되나, 대유형 2(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는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주의의무의 내용을 이루므로, '주의의무 또는'이라는 표현은 불필요
- 양형인자의 정의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고유한 부분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항만으로 구성하면 충분함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에 관련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할 경우~~
- ~~— 면허 등 법정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
-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위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② 동종 누범

- 폭력,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다)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에 포함하였음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라) 일반가중인자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대유형 1(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인자와 동일

(3) 반영하지 않음에 의견이 일치된 양형인자 : ‘상당 금액 공탁’

-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과실치사상, 교통범죄와는 달리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사회적 법익(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대한 범죄 성격도 띠고 있음
- 실제 피해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거나(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사망이라는 동일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치사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이상(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가해자의 합의 노력이나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이 타당

(4)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양형인자

(가)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감경인자

로 두고, 대유형 1(과실치사상범죄)과 그 정의 규정을 함께 사용함에는 전문위원단 의견이 일치됨. 다만, 질적 구분 방안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7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개인적 범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이라는 사회적 범익 또한 보호하는 취지임
- 디지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양형 과정에서 '합의'를 고려하는 정도의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보다는 '사후적 수습'에 중점을 두는 사업주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음

㉡ 제2 의견(4인) :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유족이 생계 곤란을 겪게 되므로, 가급적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바람직함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살인범죄, 대유형 1(과실치사상범죄)에서도 모두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처벌불원 여부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나) 특별가중인자

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할지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6인) : 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유사한 사고', '반복적 발생'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 규정을 두기 어려움
- 양형기준 전반에서 '동종 누범', '이종 누범' 등의 전과를 가중인자로 고려하고 있고, 소유형 3(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의 경우 5년 이내 재범에 관해서는 1.5배 형량을 가중하는 특별 규정도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유사한 성격의 양형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 제2 의견(4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동종 누범', '이종 누범'과 같은 양형인자 이외에도 범죄전력의 질적인 면을 양형요소로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 있음
- 특히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고려함이 타당

② (5인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 '(5인 이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가중인자로 반영할지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 제1 의견(5인) : 가중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단일범보다 높은 형량범위가 권고되므로 별도의 가중인자 반영 필요성이 낮음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는 적용되지 않고, 다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양형기준 해설). 즉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여지가 없음

㉞ 제2 의견(5인) :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이를 가중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다수 피해자는 상대적인 개념이나 일단 용인 화재사건의 피해자 수인 '5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다) 일반감경인자

① 단순한 수급인, 피용자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해당 위험영역을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지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㉞ 다수 의견(9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거대 플랜트나 건설현장의 위험영역을 지배하는 사업주나 도급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의에 부합함
- 법원 실무도 '예견가능성'뿐 아니라 '위험영역 지배'에 주목하여, 사업주나 도급사업주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임(근본적 사고 원인을 제공한 원도급인을 하도급인보다 무겁게 처벌)

㉞ 소수 의견(2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이 양형인자를 반영할 경우 사업주 또는 도급인이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위험영역을 약자에게 지배하도록 위탁하고, 사업주 또는 도급인 본인은 위험영역을 지배하지 않아 감경인자를 적용받고자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②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할지에 관하여 의견 불일치

㉞ 다수 의견(7인) :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 산업재해 재발 방지 조치로서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㉔ 소수 의견(4인) :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음

- 위반 사항의 시정은 당연한 의무이므로, 이를 굳이 감경인자로 고려할 필요 없음

#### 4.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 가. 요약

※ 강조 표시된 부분은 의견 불일치. 양형인자 부분과 검토 결과가 동일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음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li> <li>○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li> <li>○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li> <li>○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b>3회 이상 벌금</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li> <li>○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li> <li>○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 범죄)</li>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li> </ul>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li> <li>○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상범죄)</li> <li>○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li>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li> <li>○ 약물중독, 알코올중독</li> <li>○ 피해 회복 노력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li> <li>○ 진지한 반성</li> <li>○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li> <li>○ <b>피고인이 고령</b></li> <li>○ 자수, 내부 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li> <li>○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li> <li>○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li> </ul>

구분	부정적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p>과도한 곤경을 수반</p> <p>○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산업안전보건법죄)</p> <p>○ 보험 가입</p> <p>○ <b>상당 금액 공탁</b></p>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집행유예 참작사유

(1)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중 벌금 부분

① '3회 이상 벌금'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는지 여부

㉞ 다수 의견(9인) :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제외되고, 단순히 벌금형이 선고된 횟수가 3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

-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양형기준에서 사용한 문구로서 당연히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도 문구가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
- 벌금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동종 전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하지 않음

㉟ 소수 의견(2인) :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는 견해

- 벌금형의 집행유예 역시 '벌금'의 개념에 포함되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라고 하더라도 그 선고 횟수가 3회 이상이라면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고려할 정도의 동종 전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② '3회 이상 벌금'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할지 여부

㉔ 다수 의견(8인) : 기존 문구를 유지하자는 견해

- '3회 이상 벌금' 부분에 '집행유예'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고,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문구이므로, 별도 문구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제외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음

㉕ 소수 의견(3인) : '벌금(집행유예 제외)'으로 변경하자는 견해

-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양형기준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거나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벌금(집행유예 제외)'으로 변경하여 그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구를 수정하여야 함

(2) 피고인이 고령

- 주거침입범죄에서의 논의 내용과 같음
- 다만 표결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숫자가 변동되어, 제1 의견인 '피고인이 고령'을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자는 데 찬성한 전문위원은 6인, 제2 의견인 이를 제외하자는 데 찬성한 전문위원은 5인임

(3) 상당 금액 공탁

- 제1 의견(6인) : '상당 금액 공탁(과실치사상범죄)'로 표현하여, 산업안전보건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인 대유형2 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은 이상 집행유예 참작사유로도 반영하지 않음이 타당

- 제2 의견(5인)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상당 금액 공탁(과실치사상범죄, 산업안전보건범죄 중 3유형)’]
  -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수반된 다른 범죄군에서 대부분 ‘상당 금액 공탁’을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을 도모

## VI. 향후 일정

- 일시 : 2021. 3. 15.(월) 15:30 ~
- 장소 : 대법원 401호 회의실
- 안건
  -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 검토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등 검토